

경인식약청 수입검사 월간 뉴스레터

제 82호 '26.1.

수입검사관련 정보

◆ 수입식품등 검사지시

구분	품목	주요 내용				
위해정보에 따른 검사 강화	가공식품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페인산 / ASF 청정지역이 아닌 지역 내 수출작업장* 생산 돼지고기 및 그 식육가공품 / '25.11.29.(현지시간) 이후 선적분(스페인 바로셀로나州 야생멧돼지(폐사체)에서 ASF 발생에 따른 조치) 				
		작업장 번호	작업장명	주소	작업장 종류	승인일
		10.17130 /B	CAMARAS FRIGORIFICAS DECECSA SLU	POLIGON INDUSTRIAL CAMI DE CAN PLA, 7 MONTORNES DEL VALLES BARCELONA	CS	2010.1.15.
		40.12498 /B	STEF IBERIA SAU	CIM VALLES, PARCEL.LA NUM 4, SANTA PERPETUA DE MOGODA, 08130 BARCELONA	CS	2017.8.18.
		40.07928 /B	AMERICOLD BARCELONA-S ANTA PERPETUA SA	POLIGON RIERA DE CALDES, AV CAMI REIAL, 47-49, PALAU-SOLITA I PLEGAMANS, BARCELONA	CS	2024.9.4.
		5.000007 /B	APA PROCESSING BZ SLU	CARRER 28, NUM.62 – PARC LOGISTIC BARCELONA	PP	2025.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SF 추가 발생국(스페인) 1개국(기존72개국→12.9., 73개국)에 대한 열처리증명서 등 구비서류 제출('25.12.9.선적분 부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탈리아(해외제조업소 AZIENDE AGRICOLE SCYAVURU SRL) /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 총 아플라톡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국(해외제조업소 TONG GARDEN CO.,LTD) / 과자(유탕처리제품) / 산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해외제조업소 WONDERFUL PISTACHIOS AND ALMONDS) /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 총 아플라톡신 				
농·축·수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해외제조업소 RUSHAN JINGUO FOOD CO., LTD) /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 총아플라톡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해외수출업소 SIMEXCO DAKLAK LTD.) / 흑후추(열매, 건조) / 트리사이클라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라질(LOUIS DREYFUS COMPANY BRASIL S.A.) / 대두(씨앗, 건조) / 현장검사(곰팡이발생, 덩어리화, 변패 및 이취 여부 확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네시아(PT. MARITIM NUSANTARA PERKASA) / 오징어(처리형태 불문) / 카드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해외수출업소 Qingdao Grand Union Food Co., Ltd.) / 양파(신선) / 티아메톡삼(Thianmethoxa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덜란드(해외작업장 Nutricia Cuijk b.v.) / 해당 해외작업장에서 제조한 '영아용 조제유' / 바실루스 세레우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랑스(해외수출업소 BORDE SAS) / 곱보버섯(자실체, 건조) / 시마진(Simazin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국가 / 피타야(용과) / 매 수입 시 학명자료 제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별표 1]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 확인) 				

이 달의 보도자료

수입 금박에 대한 검사명령 시행

- 일본산 금박 반입 전 순도시험 검사결과 제출해야만 수입신고 허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일본에서 수입되는 **금박*** 제품에 대해 수입자가 수입신고 전에 순도시험에 대한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검사명령’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주류, 잼류 등 다양한 식품에 외관이나 모양을 좋게 하기 위한 착색료로 주로 사용되며, 순도 95% 이상의 금박을 식품첨가물로 허용

✓ 검사명령이란?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식품 등을 선정하여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

이번 검사명령은 최근 일본산 금박에 대한 통관검사결과 순도시험 검사항목 중 ‘동*’에서 반복적으로 부적합이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식품첨가물로 사용되는 금박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 동은 금박 제조 시 물성 개선 등을 위해 사용되어 잔류할 수 있어 성분규격으로 관리

참고로 식약처는 2012년부터 총 27개국 43품목에 대해 검사명령을 시행하고, 시행 기간동안 부적합 이력이 없는 품목은 해제하여 왔다. 오는 12월 30일부터는 이번 일본산 금박을 포함해 총 17개 품목에 대한 검사명령이 운영된다.

검사명령 이후 대상 수입식품 등을 수입·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에 해당 제품의 검사를 의뢰한 후 그 결과(시험성적서)를 수입신고 시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수입식품이 공급·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위해우려가 있는 식품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검사명령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알림>공지/공고>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수입식품 등 검사명령 운영 현황

담당 부서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검사관리과	책임자	과장	손영욱 (043-719-2201)
		담당자	사무관	유행일 (043-719-2210)

불임

수입식품 등 검사명령 운영 현황

순번	시행일자	대상식품	국가	검사항목
1	'16.2.29.~'26.2.28.	천연향신료 중 분말형태의 제품	인도	금속성이물
2	'18.10.22.~'26.10.21.	베리류(블루베리, 링곤베리, 빌베리) 및 이를 원료로 제조한 잼류, 과·채가공품	폴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핀란드, 오스트리아, 스웨덴	방사능 (요오드, 세슘)
3	'19.4.23.~'26.4.22.	능이버섯	러시아 우크라이나	방사능 (요오드, 세슘)
4	'21.3.31.~'26.3.30.	참다랑어 (생식용 수산물)	일본(수출국)	살모넬라
5	'21.10.22.~'26.10.21.	과자 (밀봉제품에 한하며, 발효제품 또는 유산균 함유제품 제외)	인도 (1개 제조업소)	세균수
6	'22.3.31.~'26.3.30.	기타소금	파키스탄	불용분
7	'22.12.24.~'26.12.23.	목이버섯(자실체, 건조)	중국	잔류농약 1종 (카벤다짐)
8	'23.3.31.~'26.3.30.	고추(열매)	베트남	잔류농약 8종 (디니코나졸, 톨펜피라드, 트리사이클라졸, 페메트린, 디메토에이트, 아이소프로티올레인, 메토미노스트로빈, 모노크로토포스)
9	'23.6.30.~'26.6.29	침출차	중국	잔류농약 5종 (피리다벤, 디노테퓨란, 오쏘페닐페놀, 프로클로라즈, 클로르피리포스)
10	'24.3.29.~'26.3.28.	과·채가공품 (비살균 제품)	중국 (2개 제조업소)	대장균
11	'24.6.28.~'26.3.27.	빵류	중국 (4개 제조업소)	보존료

순번	시행일자	대상식품	국가	검사항목
12	'24.9.30.~'26.9.29.	당절임 (밀봉 및 가열 살균 또는 멸균 처리한 제품은 제외)	베트남 (2개 제조업소)	타르색소
13	'24.12.30.~'26.12.29.	냉동부세	중국	에톡시퀸
14	'25.3.31.~'26.3.30.	불로초	중국	잔류농약 15종 (말라티온, 사이퍼메트린, 사이할로트린, 아세타미프리드, 아세토클로르, 이미다클로포프리드, 이프로디온, 카벤다진, 클로르페나피르, 클로르피리포스, 트리아조포스, 트리풀록시스트로빈, 펜프로파트린, 포레이트, 프로클로라즈)
15	'25.6.30.~'26.6.29	새우 및 기타 수산물가공품(새우 함유량 30% 이상)	베트남 (3개 제조업소)	독시싸이클린
16	'25.9.30.~'26.9.29.	과·채가공품(냉동제품)	베트남 (7개 제조업소)	세균수
17	'25.12.30.~'26.12.29.	금박	일본	동

법령 등 개정 사항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공고 제2025-522호, 2025.12.23.)

○ 주요내용

가.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의 식중독균 규격 개정[안 제5. 11. 11-3 5) (11), 제5. 11. 11-3 5) (13), 제5. 11. 11-3 5) (16)]

-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의 황색포도상구균, 장염비브리오,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에 대한 통계적 개념의 미생물 규격 도입

나. 사양벌집꿀 및 사양벌꿀의 식품유형 명칭 개정[안 제5. 22. 22-1 4), 제5. 22. 22-1 5), 제8. 6. 6.12 6.12.1]

- 한국양봉협회에서 사양벌꿀의 명칭을 설탕꿀로 개정 요청하고 농식품부에서도 한국양봉협회의 개정 요청에 동의
- 식품유형 명칭은 안전성과 관련이 없는 사안으로서 산업 주체의 요청에 따라 사양벌꿀의 유형 명칭을 설탕꿀로 변경

다. 식품원료 목록 개정[안 별표 1, 별표 2, 별표 3]

- 어획량 등 식용근거가 확인된 가시진흙새우(Argis toyamaensis) 등 73종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별표 1]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2. 동물성 원료에 추가
- 국내 전래적 식용근거가 확인된 작두콩 씨앗·어린꼬투리, 유자 잎, 프로폴리스를 [별표 1] 및 [별표 2] 원료 목록에 추가
- 겹삼잎국화, 흑산내 추출물, 풀무치, 땃두릅나무 추출물을 [별표 3] “한시적 기준·규격에서 전환된 원료”의 목록에 등재
- 전통발효식품 유래 미생물과 국제 공인기관에서 식용근거가 확인된 미생물을 [별표 1] 및 [별표 2] 원료 목록에 추가(5건)

라. 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안 별표 4]

- 디메설파젯 등 124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마.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개정[안 제2. 3. 8) (1), 별표 5 중 (171) 폐닐부타존]

- 안전성 등의 문제로 국내 사용 허가를 취소한 폐닐부타존을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물질 목록으로 추가하고, 현행 잔류허용기준을 삭제

바. 일반시험법 신설 및 개정[안 제8.]

○ 의견제출 : 2026년 2월 23일까지 의견서를 식품기준과로 제출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공고 제2025-524호, 2025.12.23.)

○ 주요내용

- 가. 기능성 원료의 기능성 내용 확대(안 제 3. 2. 2-49 1) 3) 및 4), 제 4. 3. 3-82)
- 키토올리고당의 기능성 내용(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제조기준 및 시험법을 추가·신설하여 고시형 원료에 반영함
- 나. 개별성분별 시험법 개정(안 제 4.2.2-1.4.2.6, 제 3.3-6, 제 3.3-8, 제 3.3-12, 제 3.3-13, 제 3.3-32, 제 3.3-57, 제 3.3-58)
- 시험 대상 명확화, 시료 채취량 확대, 정제방법 추가, 관련 규정의 개정 사항 반영 등 시험법 개선 필요
 - 봉해시험법, 비타민 B1, 나이아신, 비타민 B12, 비오틴, 지방산, 유산균수, 유산간·구균 및 비피더스균 시험법을 개선하고자 함

○ 의견제출 : 2026년 2월 23일까지 의견서를 식품기준과로 제출

알려드립니다

◆ 어린이 기호식품 정서저해식품 규정 적용 안내

- 근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9조(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 금지 등) 및 「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 섭취하는 모양(담배연기 캔디 등)에 대한 정서저해식품 규정 적용
 - 정서저해식품 규정에서 섭취하는 행위가 정서저해식품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도 정서저해식품으로 판단
 - 예: 빨대를 통해 가루를 섭취하여 부는 과정에서 분진이 담배연기처럼 보이는 경우
-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모양 제품의 정서저해식품 규정 적용
 - 가상화폐의 경우 실제 통용되는 화폐와 유사하게 인터넷상 거래 등에 사용될 수 있어 해당 규정에 따른 정서저해식품으로 판단함.
-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이 국내 반입·유통되지 않도록 수입신고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입수산물 검사 관련 알림

- 최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교잡종, 해당 지역에서 생산하거나 자생하지 않는 수산물이 수입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치하고자 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모든 수입 수산물
- 방법: 수입수산물 수입신고시 ‘수입 수산물의 학명 서류’ 확인
 - 수출국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위생약정국) 또는 해외제조업소가 발행한 학명증명서 (비)약정국)
- 시행시기: 2026.7.1. 선적분부터 (6개월간 유예)
- 관련문의: 수입검사관리과 043-719-2231

◆ 식품유형 분류 관련 알림

- 고구마, 감자 등을 주원료로 하여 유지에 튀겨서 제조한 제품의 식품유형은 주원료에 따라 분류(과채가공품, 서류가공품 등)되며,
 - 기름을 두르고 얇게 부쳐내는 김치전 등 전제품의 식품유형은 ‘즉석조리식품’으로 분류됩니다.
- 또한, 튀김제품과 전제품 중 통관실적이 있는 동일사동일제품은 포장지 소진 등을 위해 2026.6.30.(선적일 기준)까지 종전대로 통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구비서류 목록 변경 알림[붙임참고]

- 수입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는 구비서류 목록을 붙임과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 모든 영업자분들께서는 변경사항을 확인하시고 수입식품등 신고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 베트남산 조미취치포 수입가능 해외제조업소 명단 변경 등

[붙임 1] 수입검사 뉴스레터 신청서

- ◇ 경인식약청 수입관리과에서는 수입 식품등 및 위생용품 관련 영업자를 대상으로 수입검사 관련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는 정책메일서비스(PMS; Policy Mail Service)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 정책메일서비스(PMS)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 양식을 작성하시어 **수입관리과 팩스 (02-2110-0815)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메일서비스(PMS) 등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성명 (필수)					
2. E-mail (필수)					
3. 업소명 (필수)					
4. 관심분야(업종) (중복선택 가능)	1)수입식품(<input type="checkbox"/>) 2)축산물(<input type="checkbox"/>) 3)수산물(<input type="checkbox"/>) 4)위생용품(<input type="checkbox"/>) 5)신고대행업(<input type="checkbox"/>) 6)보관업(<input type="checkbox"/>)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경인식약청 수입관리과 정책메일서비스(PMS) 등 제공 ※ 수집·이용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E-mail, 업소명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2년 (2년 주기로 재동의 안내 메일 송부, 보유기간 만료 후 자동파기)					
▶ 동의 거부 및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PMS 등이 제공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성명 : _____ (서명 또는 인)

경인지방식약청 수입관리과 전화 02-2110-8159 팩스 02-2110-0815